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6. 9 선고 2020가단15939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4. 28.

판 결 선 고 2021. 6. 9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 2019. 7. 25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572059호 양수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'31,268,843원 및 그 중 14,003,663원에 대하여 2009. 6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'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.

나.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을 소유하다가 상속인으로 자녀인 E, C, 피고(각 상속분 1/3)를 두고 2019. 7. 25. 사망하였다.

다. C와 피고는 2019. 7. 25. C의 이 사건 부동산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피고가 이를 취득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(E도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였다. 이하 '이 사건 분할협의'라 한다)를 하였고,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. 1. 23. 접수 제1748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를 마쳤다.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는 무자력 상태였다.

라. 한편,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1/3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,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C의 다른 채권자인 F 유한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소(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25811호)를 제기하여 계속 중이었고, 2021. 2. 3.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2021. 2. 25.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(이하 확정된 위 판결을 '선행판결'이라 한다).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21. 4. 13. 선행판결이 집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3분의 1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, C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,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,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,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2003. 7. 11. 선고 2003다19558 판결 참조).

나. 직권으로 보건대, 원고는 선행판결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,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1/3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선행판결의 집행이 완료되자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취하하였으나, 이미 선행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되고,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C의 상속지분에 관한 부분의 말소가 이루어진 이상 원고의 채권자취소의 소 또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(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지분 원상회복 후 이루어지는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).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,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, 제99조를 적용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지혜선

부동산의 표시

1동의 건물의 표시

서울특별시 금천구 , , , 아파트 동

(도로명주소)

서울특별시 금천구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물의 번호 :

구 조 :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

면 적 : 3층 303호 89.46 m²

대지권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서울특별시 금천구

2. 서울특별시 금천구

3. 서울특별시 금천구

4. 서울특별시 금천구

대 243 m²대 47097.4 m²대 27.6 m²대 31.2 m²

대지권의 종류 : 소 유 권

대지권의 비율 : 47399.2 분의 38.692

-이상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판할-